

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제 안 설 명

□ 의안번호 제2649호

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자치구에 부과·징수 권한을 위임한 시세 중
시장이 세무조사 한 시세에 대하여 직접
부과·징수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
과세업무의 일원화로 소송 사무, 체납징수 등을
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
개정하는 것입니다.

□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
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□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2021. 9. 8.

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이 병 한